

竹島

TAKESHIMA

왜 일본 영토인가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의 포인트**

Q&A
포함

외무성

목 차

- ◆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 P2
- ◆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 P3-P4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의 포인트

- ▶ **Point 1**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 P5-P6
 - ▶ **Point 2**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 ————— P7
 - ▶ **Point 3**
일본은 17 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 ——— P8
 - ▶ **Point 4**
일본은 17 세기말 ,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 P9
 - ▶ **Point 5**
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 P10
 - ▶ **Point 6**
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 P11-P12
 - ▶ **Point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 P13-P14
 - ▶ **Point 8**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 P15
 - ▶ **Point 9**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른바「이승만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였습니다 . ————— P16
 - ▶ **Point 10**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 P17
- ◆ 다케시마 문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Q&A ————— P18-P26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 2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 3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한 기본자료】

- 오키제도의 북서 약 158 킬로미터,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하는 군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다.
- 메지마 (히가시지마) 와 오지마 (니시지마) 두 섬과 그 주변의 수십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지며, 총 면적은 약 0.20 평방킬로미터 (도쿄돔 약 5 개에 해당하는 면적).
- 각 섬은 해변에서 솟아난 가파르고 험준한 화산섬이며 주위는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식물의 생육과 식음수가 부족하다.



선생님 !!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10 개의 포인트』 와 Q&A 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일본은 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

일본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 17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인이 정부 (에도막부) 의 공인 아래에 울릉도로 건너갈 때 다케시마를 항행의 목표로 삼거나 , 또는 배의 중간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강치나 전복 등의 포획에도 이용했습니다 .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은 1905년 ,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오키 섬 주민들로부터 본격화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1905(메이지 38) 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후 관유지 대장 등록과 , 강치 포획의 허가 ,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 없이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처럼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국의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 상으로도 여러 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서명 , 1952년 4월 28일 발효) 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은 ‘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이다 ’ 라며 한국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 이것은 미국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 이러한 경위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 ’ 으로 규정되었고 ,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 조약의 발효 후 미국은 일본국에 대해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 그 신청을 받아 일미 협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국이 공표했습니다 .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은 명확히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다케시마를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불법점거를 하게 됨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쇼와 27)년 1월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즉시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후 다케시마에 경비대원 등을 상주시키고,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힘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국은 한국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한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또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

일본은 지금까지 3번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의한 해결을 한국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 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외면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본국은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 설정에 따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한국이 일본의 일관된 항의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국제법상 증거력이 부정되어 영유권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케시마 점거를 영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 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에게 불법점거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ICJ) 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결착지으려고 일본이 지금까지 3 번이나 제안해 왔지만, 한국측은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단다.



Point
1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옛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그림 1).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개정일본여지로서정전도’ (1846년)(사진 제공: 메이지대학교 도서관 소장)



다케시마 지도 (1724년 경)
(사진 제공: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의해 한때 울릉도의 명칭에 혼란이 생겼다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즐레(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켈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켈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그림 2).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와 ‘마쓰시마’(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즐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즐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로 명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메이지 1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

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메이지 38)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림 1] 예로부터의 호칭



[그림 2] 19세기 후반의 호칭



일본에서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마쓰시마(松島)」로 불렸고 옛부터 잘 알려진 섬이었지요?

그렇단다. 일본이 현재의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옛부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부터도 알 수 있지. 19세기 후반에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면서 한때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1905년에 현재의 다케시마를 「다케시마」로 정식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란다.



Point
2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측의 고문헌, 고지도에 적혀 있는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

예를 들어,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산도」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사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토대로 한 문헌

또한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誌)”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 “강계고(疆界考)”(1756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Point5, Q&A3 참조)

지도상의 위치와 크기가 부자연스러운 「우산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Q&A2 참조)

Point
3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에도시대 초기부터 막부의 공인하에 어부들에게 이용되던 다케시마

1618년^(주)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양가는 소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소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주) 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竹島渡海由来記抜書 (도항면허 (사진) 제공)
(사진 제공: 돗토리현립 박물관)



에도시대에 일본은 다케시마를 어떻게 이용했었나요?

한국이 옛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지만, 일본은 17세기에 일본인이 정부(에도막부)의 허락하에 울릉도에 갈 때에 다케시마를 항해의 목표나 정박지로 그리고 어획하기 좋은 곳으로 이용했었다.



Poin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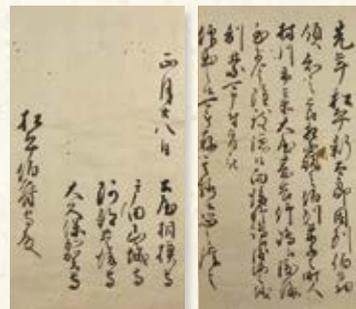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막부와 조선왕조 간의 의견대립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692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음 해 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왕조와의 우호를 고려하여 울릉도에 도항하는 것은 금지하였지만, 다케시마에 도항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울릉도도해금지로중봉서 (鬱陵島渡海禁止老中奉書)(사본)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에 수록)
(사진제공: 돗토리현 박물관)



다케시마에 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에도막부가 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어디까지나 울릉도만이었고,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단다. 이것으로도 에도막부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지.



Point
5

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

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 Q&A3 참조)



안용복이라는 사람의 진술은 왜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나요?

안용복의 진술은 국가의 규칙을 위반하여 국외로 도항하였고, 귀국 후에 취조를 받았을 때의 내용이라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 다수 있다는 것이지.



Point
6

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일본의 영토임을 확고히 재확인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제 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제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메이지 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3 대신에게 ‘리안코 섬’ ※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메이지 38)년 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오키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제 포획을 허가제로 하였습니다. 강제 포획은 그 후 194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리안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앙쿠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따라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의 다케시마는 ‘리안코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돌섬」이「다케시마」였다는 한국의 억지스러운 해석

한편, 한국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鬱島郡)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島)'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방언 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

어 이 발음하므로 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되었든 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 Q&A4 참조)



1909년경 다케시마의 어업회사 (사진 제공: 고금서원)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포획 모습 (사진 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개인소장)



1905년의 각의 결정에 의해 시마네현에 편입됨에 따라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단다. 한국이 주장하는 1900년의 칙령에 적혀 있는 돌섬이 다케시마라고 하는 애매하고 의문이 남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은 1905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관유지 대장에 등록하여 강치 수렵을 허가하는 등을 통해 주권행사를 평온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지. 이렇게 하여 17세기에 이미 확립되어 있던 다케시마에 대한 우리나라 일본의 영유권이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다른 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



- Point 1
- Point 2
- Point 3
- Point 4
- Point 5
- Point 6
- Point 7
- Point 8
- Point 9
- Point 10
-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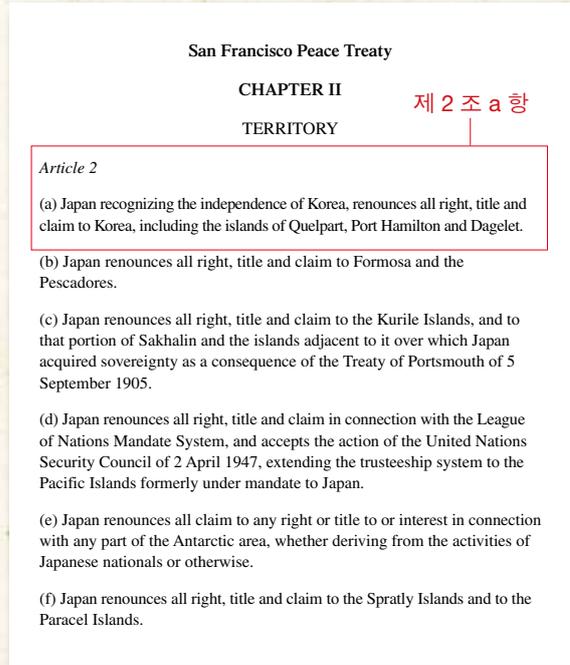
Point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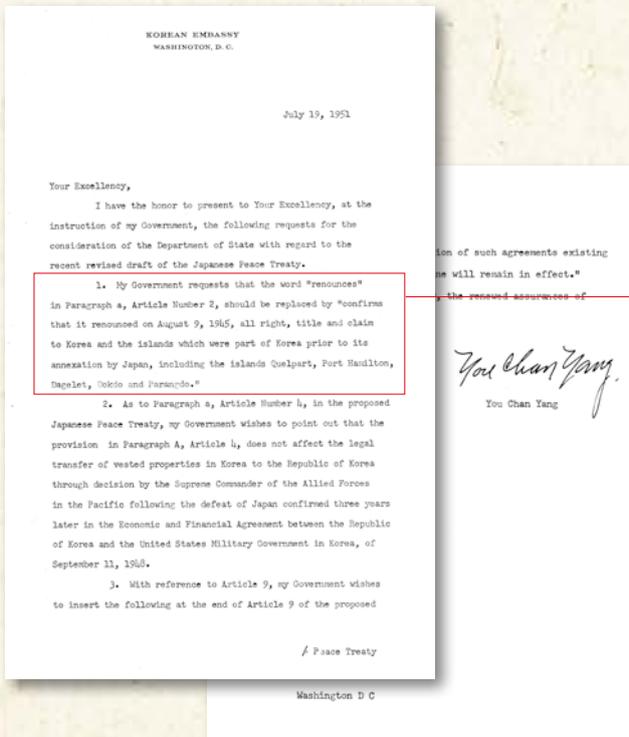
1951년에 한국은 미국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제출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통하여 애치슨 미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 2 조 a 항의 '포기하다' 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 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2 조



1. My Government requests that the word "renounces" in Paragraph a, Article Number 2, should be replaced by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 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gdo."

【(주 1) 밑줄부분 참조】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애치슨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문 (사본)

미국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명확하게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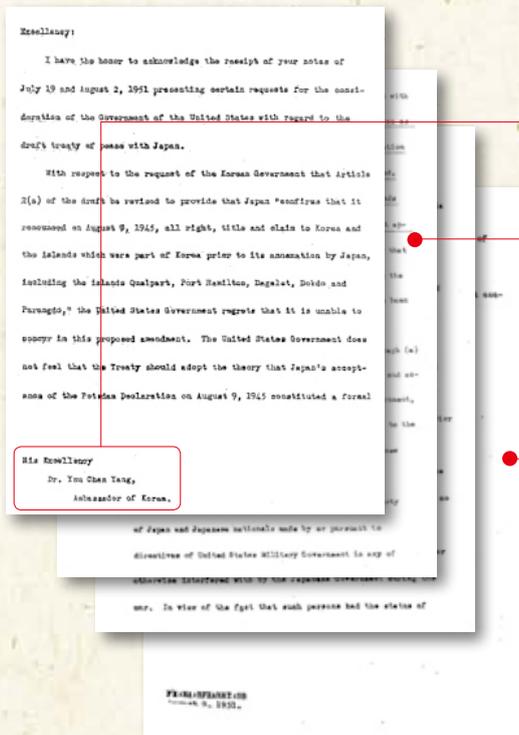
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하여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사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답함으로써,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양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

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2)

이상 주고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스크가 보낸 서한문 (사본)

His Excellency
Dr. You Chan Yang,
Ambassador of Korea.

in the Declaration. As regards the island of B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주2) 밑줄부분 참조】

For the Secretary of State:
Dean Rusk

Point
8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 2 차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 속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던
추가적 사실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었던 1951년 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SCAPIN) 제 2160
호에 따라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
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7월 미
군이 계속하여 다케시마를 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
를 희망하자 일미행정협정 (주: 구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한 협정. 현재의 '일미지위협정' 으로 이어짐)
에 근거하여 동 협정의 실시에 관한 일미간의 협의기
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함과 동시
에 외무성이 그 취지를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강치 포획 및 전복과
미역 채취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
으며,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부터 다케시마를 폭격
훈련 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1953년
3월 합동위원회는 이 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일본 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의 임무
를 수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
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
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九、竹島爆撃訓練区域
区域
北緯三七度一五分、東經一三
一度五二分の点を中心とする直
径一〇マイルの円内
演習時間
毎日二十四時間



미군훈련장으로 지정됨을 전하는 관보 (1952년 7월)



제 2 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의 원칙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 미국으로서도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쓰고 싶다는
요청을 한 것이지.



Point
9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였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정된 「이승만라인」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케시마에 한국경비대가 상주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불법점거상태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소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측이 어떤 조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만라인



총격을 당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1953년)
(사진 제공: 요미우리 신문사)

Point
10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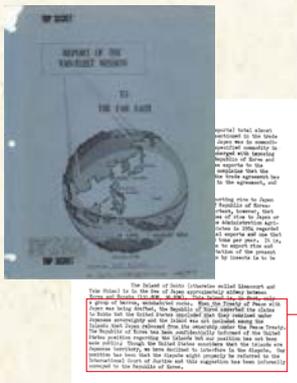
일본국은 한국의 ' 이승만 라인 '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 어업 종사 , 순시선에 대한 사격 ,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습니다 .

그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 년 9 월 외교상의 구상서 (note verbale) 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만 , 같은 해 10 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주 1) . 1962 년 3 월 일한 외무장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 (당시) 이 척덕신 한국 외무부 장관 (당시) 에게 본 건을 ICJ 에 회부하기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2012 년 8 월 일본국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 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 같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주 2) .

(주 2) ICJ 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원한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일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 법의 지배 ' 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958 년 이후 합의 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을 제소해 온 경우에도 ICJ 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만일 일본국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ICJ 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게 됩니다 .

(주 1) ICJ 에 대한 회부는 1954 년 당시 미국도 한국에 대해 권유했었습니다 . 1954 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 본 건을 ICJ 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안했다 '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 (사본)

a group of barren, uninhabited rocks.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Q & A



- Q1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 Q2 한국측의 고문헌·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Q3 ‘안용복’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 Q4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 Q5 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
- Q6 제 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Q1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A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에서 가깝다는 것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를 들자면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툰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no foundation)’고 판시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예

로도 2007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다툰 카리브해 영토·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02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 섬·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각했습니다.

- Point 1
- Point 2
- Point 3
- Point 4
- Point 5
- Point 6
- Point 7
- Point 8
- Point 9
- Point 10
- Q&A

Q2

한국측의 고문헌 · 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A

아닙니다. 한국측은 한국 고문헌 · 고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 Point2 참조)

한국측이 ‘ 근거 ’ 로 삼는 고문헌에 대하여 :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 울릉도 ’ 와 ‘ 우산도 ’ 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 우산도 ’ 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 세종실록지리지 ” (1454 년) 와 “ 신증동국여지승람 ” (1531 년) 에 우산 · 울릉의 두 섬이 (울진) 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세종실록지리지 ” 는 ‘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 ’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 신증동국여지승람 ” 은 ‘ 일설에 따르면 우산 ·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 ’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 우산도 ’ 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태종실록 ” 33 권의 태종 17 년 2 월조 (1417 년) 에는 ‘ 안무사 김린우 (金麟雨) 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 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 호에 남녀 합하여 86 명 ’ (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產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撲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 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측은 “ 동국문헌비고 ” (1770 년) 등에 ‘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 (松島) 이다 ’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18 세기 이후의 문헌 기술은 1696 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Q&A ③ 참조). 또한 18 세기와 19 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다 ’ 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 세종실록지리지 ” (15 세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16 세기) 의 우산이 다케시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측이 ‘ 근거 ’ (주) 로 삼는 고지도에 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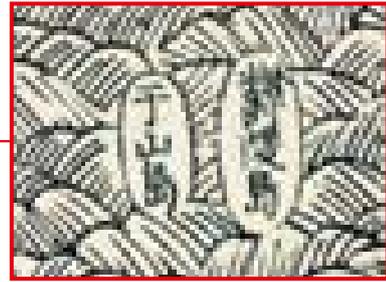
한국측에는 16 세기 이래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주) 참고로 국제법상으로 지도는 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닌 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약의 문언에 의해 증명되며, 지도는 보강 증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증동국여지승람 ” (1531 년) 에 첨부되어 있는 ‘ 팔도총도 ’ 에는 울릉도와 ‘ 우산도 ’ 의 2 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듯 ‘ 우산도 ’ 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 그려졌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상의 ‘ 우산도 ’ 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 팔도총도 ’ 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2 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 (사본)



(확대도)

18 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를 그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우산도도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711 년에 실시된 박석창의 울릉도 순시와 관련된 ‘ 울릉도 도형 ’ 에는 울릉도 동쪽에 ‘ 우산도 ’ 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 所謂于山島 海長竹田 ’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 해장죽 (海長竹) ’

은 조릿대의 일종인데, 바위섬인 다케시마에는 전혀 그와 같은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또한 울릉도 동쪽 약 2km 에 위치한 죽서 (竹嶼) (주) 에는 조릿대가 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 울릉도 도형 ’ 에서의 ‘ 우산도 ’ 는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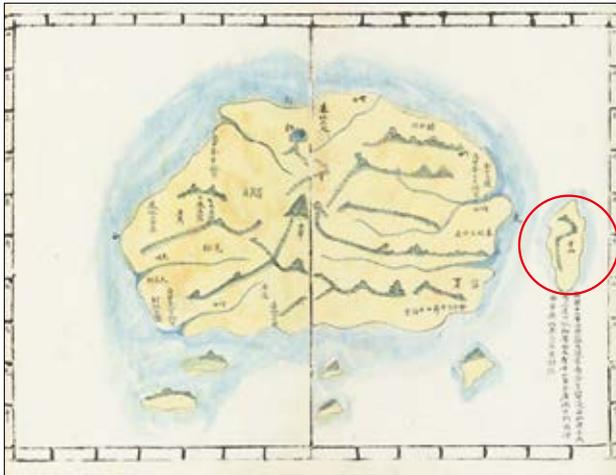
해군 수로부가 작성한 울릉도 실측도
(주) 죽서 (竹嶼): 울릉도 동쪽 약 2km 에 위치한 작은 섬.

한국의 저명한 지도 작성자인 김정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청구도(靑邱圖)' (1834년) 중의 '울릉도도(鬱陵島圖)' 에도 울릉도 동쪽에 '우산' 이라고 표기한 길쭉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그림의 상하좌우로 눈금(1 눈금은 조선의 10리, 약 4km)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이 약 2~3km의 거리

로 그려져 있는 점 및 섬의 형상에서 이 우산은 명백히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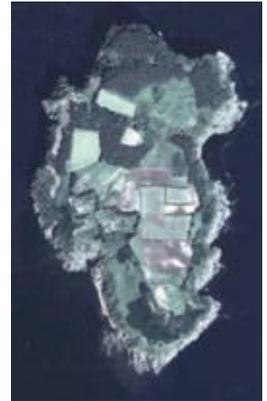
말하자면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산은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구도』(1834년)의 '울릉도도'(덴리대학부속 덴리도서관 소장)



『청구도(靑邱圖)』(1834년)의 「우산(于山)도 죽서(竹嶼)」



현재의 죽서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있는 죽서(竹嶼)를 우산이라고 하는 지도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학부편집국이 1899년에 펴낸 '대한전도'는 경도와 위도의 선이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인

데,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우산도 죽서(竹嶼)이며,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대한전도』(동양문고 소장)



Q3

‘ 안용복 ’ 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

A

17 세기말 2 번 일본에 왔던 조선인으로 한국은 그의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며 , 또한 그 진술은 사실에 위배되고 신빙성이 결여됩니다 .

(→ Point2, 5 참조)

안용복은 1693 년에 울릉도 (당시 일본명 ‘ 다케시마 ’) 에 출어했다가 오야 집안의 대리인이 일본으로 데려와 송환했으며 , 1696 년에는 돗토리번에 진정을 올릴 일이 있다며 이번에는 자의로 일본에 왔던 인물입니다 . 그러나 그 후 안용복은 함부로 국외로 도항했다고 하여 조선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 취조 중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월경을 꾸짖었다 , 일본인이 송도 (松島) 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 (子山島) 이며 ,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 이 때문에 그 후 조선의 문헌에서 우산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를 결부시키는 기술이 등장되었습니다 . 한국측은 이 안용복의 취조시의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이 안용복의 진술은 “ 숙종실록 ” 의 숙종 22 년 (1696 년) 9 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헌 (숙종 23 년 정축 2 월 을미조) 에서는 당시의 조선이 안용복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 그의 행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충 1 참조) . 또 안용복의 진술 자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묘사가 많으며 ,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보충 2 참조) .

보충 1: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

“ 숙종실록 ” 에는 안용복의 도일 (渡日)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 동래부사 이세재가 왕에게 말하기를 , 쓰시마의 사신 (주) 이 “ 지난해 귀국인이 진정서를 내려고자 했는데 ,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去秋貴國人有呈單事出於朝令耶) ” 라고 물었다 , 이에 대해 이세재가 “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역관을 에도로 보내지 , 무엇을 꺼려 우매한 어민을 보내겠는가 (若有可弁送一訊於江戶 顧何所憚而乃送狂蠢浦民耶) ” 라고 말했다 . … 비변사는 “ … 바람에 떠도는 어리석은 백성이 설령 뭔가 했더라도 조정이 알 바는 아니다 (… 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為 亦非朝家所知) ” 라고 말했다 . 이렇게 쓰시마의 사신에게 말해도 되는지 묻자 왕이 이를 윤허했다 (請以此言及館優允之) ’ (숙종 23 년 정축 2 월 을미조) .

(주) 쓰시마번은 에도시대에 조선을 대상으로 한 외교 · 무역의 창구였습니다 .

이 점은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이 쓰시마 번주 앞으로 보낸 서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에 전달되었습니다.

‘작년에 표착한 사람의 일입니다만. 바닷가 사람들은 배를 짓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으며, 큰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풍랑에 휩쓸려 월경하여 귀국에 도달합니다(昨年漂氓事濱海之人率以舟楫為業颿風倏忽易及飄盪以至冒越重溟轉入貴國). … 만약 진정서를 냈다면 참으로 그것은 무지망작의 죄에 해당합니다(…若其呈書誠有妄作之罪). 그래서 이미 법에 따라 유형에 처했습니다(故已施幽殛之典以為懲戡之地).’

안용복이 타고 있던 배에는 ‘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라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또한 안용복은 ‘鬱陵于山兩島監稅將’이라고 자신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 관명은 가공의 것이며 안용복 자신이 사칭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감세’나 ‘감세장’이라고 칭한 것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징세관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안용복은 우산도를 큰 섬으로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보충 2: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

안용복의 진술에는 많은 모순이 있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안용복은 2번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1693년에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일본에 끌려 왔었고, 두 번째는 1696년에 돗토리번에 호소할 일이 있다며 밀항해 돗토리번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증언은, 추방된 안용복이 귀환 후 비변사에서의 취조에 대해 진술한 조서의 초록입니다. 그에 따르면 안용복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

는 내용의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쓰시마번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쓰시마번을 경유하여 조선에 송환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는 문서를 부여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1696년 5월에 도일했을 때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는 이미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하고, 그 지시가 돗토리번에 전달되었으며, 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게 부여했던 ‘도항면허’는 반납되었습니다. 한국측에는 이 안용복의 진술을 토대로 마치 1696년 안용복의 도일에 의해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논의도 있지만, 안용복이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4개월 후입니다.

안용복은 귀국 후 조사에서 일본인을 향해 ‘송도(松島)는 즉 자산도(子山島)(于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 너는 왜 이곳에 사느냐(松島即子山島、此亦我國地、汝敢住此耶)’라며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일본인은 울릉도로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안용복은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 동료들로부터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 우산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다케시마기사(竹島紀事)”), 일본에 끌려왔을 때는 ‘울릉도보다 매우 큰 섬’을 목격했다고 합니다(“변례집요(辺例集要)”). 안용복이 ‘송도는 자산도이다’라고 한 것은, 1693년에 일본에 끌려 온 시기에 알게 된 송도(오늘날의 다케시마)의 이름을, 조선이 전통적인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던 우산도에 적용시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송도는 자산도이다’라는 것도 명칭상의 것으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Q4

1905 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

A

아닙니다 . 한국측에서는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 (→ Point2, 6, Q&A2 참조)

예를 들면 한국측은 “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 신증동국여지승람 ” (1531년) 등 조선의 고문헌에 이름이 나오는 ‘ 우산 (도) ’ 이 다케시마라고 하고 , 예로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 있는 우산 (도) 은 울릉도의 별명이거나 18세기 이후의 지도에 그려진 우산 (도) 과 같이 울릉도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섬 (죽서) 이며 ,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

또 한국측은 “ 대한제국 칙령 41 호 ” (1900년) (주) 에 따라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 울도군 ’ 이 관할하는 지역을 ‘ 울릉 전도 (全島) 와 죽도 (竹島) 석도 (石島) ’ 로 규정했다 , 이 ‘ 석도 ’ 가 ‘ 독도 (다케시마의 한국명) ’ 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 석도 ’ 가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또한 만일 칙령의 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 칙령의 공포 전후에 대한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은 없으므로 , 한국에 의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주) 1882년에 조선정부는 울릉도에 대해 470년간 이어져 온 ‘ 공도정책 (空島政策) ’ 을 폐지하고 ,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 그 후 1900년 6월 , 울릉도에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대한제국 (조선은 1897년 10월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 은 그 공동조사의 보고서 (우용정의 “ 울도기 ”) 를 참고로 1900년 10월 ‘ 외국인인 왕래 교역하고 교제하기에 ‘ 필요하다고 하여 칙령 41 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 (島監) 을 군수 (郡守) 로 개정하는 건 ’ 을 제정했습니다 . 이 칙령 제 2 조에서 ‘ 울도군 ’ 의 관할 구역이 ‘ 울릉 전도 (全島) 와 죽도 (竹島) 석도 (石島) ’ 로 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갑작스럽게 출현한 석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이 칙령의 제정에 앞서 이루어진 상기의 공동조사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를 길이 70리 (주 : 약 28km), 넓이 40리 (주 : 약 16km), 둘레 145리 (…全島長可為七十里 廣可為四十里 周廻亦可為一百四十五里) 로 하고 , 의정부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에 의한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 ” (1900년) 에서는 ‘ 해당 섬 지방은 세로 80리 (주 : 약 32km) 이며 가로 약 50리 (주 : 약 20km)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다케시마는 이 범위 밖에 있으며 , 석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울릉도 근방 (수 Km 이내) 에는 죽서 (竹嶼) 와 관음도 (觀音島) 라는 이름의 비교적 큰 섬이 있는데 , 이러한 섬을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1 리 (일본) = 약 10 리 (조선) = 약 4k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Point 10

Q&A

Q5

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 지역에 해당되니까 ?

A

아닙니다 . 해당되지 않습니다 .

(→ Point7 참조)

한국측은 제 2 차 세계대전 중 미영중 3 국 정상이 발표한 ‘ 카이로선언 ’ (1943) 에서 말하는 ‘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 지역에 다케시마가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케시마는 한번도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고 , 늦어도 17 세기 중반까지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 1905 년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의해 그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고 , 그 후에도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탈취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

또한 원래 전후의 영토 처리는 최종적으로는 평화 조약을 비롯한 국제약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제 2 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며 ,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

Q6

제 2 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

A

아닙니다 . 연합국 총사령부에는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

한국측은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SCAPIN) 제 677 호 (보충 1 참조) 및 제 1033 호 (보충 2 참조) 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한국측의 설명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 한국측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든 지령에 ‘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한국측의 주장은 전혀 성

립되지 않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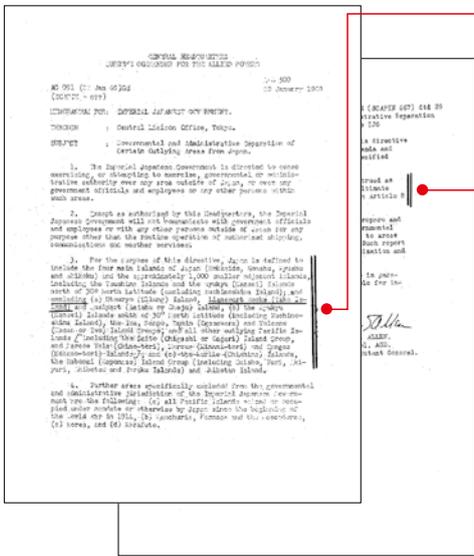
전후에 일본국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2 년 발효) 입니다 . 따라서 본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케시마의 영유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

보충 1: SCAPIN 제 677 호에 대하여

1946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 677 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때, 그 제 3 항에 '이 지령에서 일본이란 일본의 4 대섬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인접한 작은 섬에는 쓰시마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난세이) 제도 (구치노시마를 제외) 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 외에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주 1) 그러나 동 제 6 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 8 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주 2)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츠담선언 제 8 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한다'). 한국측의 설명에서 이 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 2: SCAPIN 제 1033 호에 대해

1946년 6월 연합국 총사령부가 SCAPIN 제 1033 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 (이른바 맥아더 라인) 을 확대했을 때 그 제 3 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 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 3)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 5 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및 어업권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현은 아니다' (주 4) 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한국측의 설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아더 라인' 은 1952 (쇼와 27) 년 4 월 25 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3 일 후인 4 월 28 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표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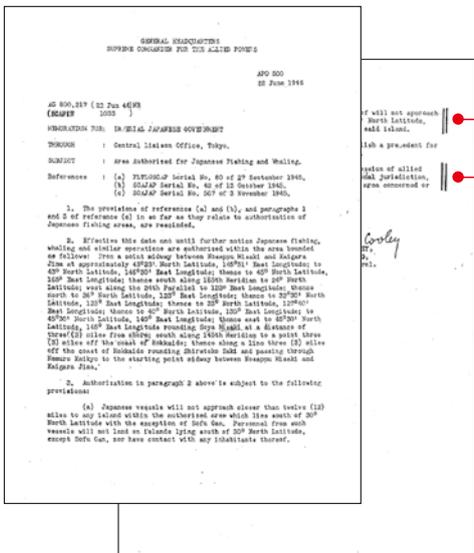
-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 (b) the Ryukyu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개요 : (주 1) 밑줄부분 참조]

-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주 2) 밑줄부분 참조]

SCAPIN 제 677 호



- 3.(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주 3) 밑줄부분 참조]

- 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concerned or in any other area.

[(주 4) 밑줄부분 참조]

SCAPIN 제 1033 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우편번호 100-891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
전화번호 : 03-3580-3311(대표번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2014년 3월 발행

【사진제공·협력】 메이지대학 도서관, 돗토리 박물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고금서원,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요미우리 신문사, 덴리대학부속 덴리도서관, 동양문고

